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330

발의연월일: 2022. 4. 19.

발 의 자 : 홍익표 · 김영배 · 김진표

박성준 · 오영환 · 윤영찬

전용기 • 전혜숙 • 정태호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징수하도록하여 납세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나친 세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원산출세액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 부담 상한의 실질적인한도가 1.5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세 부담의 상한에 대한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실제로 부과·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재산세에 대한 상한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

우에는 세 부담 상한의 비율을 100분의 105로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 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에 대한"을 "재산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제로 부과·징수한"으로, "100분의 150"을 각각 "100분의 1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억원"을 "6억원"으로, "주택에 대한"을 "주택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제로 부과·징수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을 "6억원을 초과하는"으로, "주택에 대한"을 "주택에 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제로 부과·징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 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 (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 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 -----재산에 대하여 관할 지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제로 부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 과·징수한-----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 -----100분의 110--------100분의 11 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 만,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주택 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 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 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 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6억원-----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 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 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 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 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 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 액
-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 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 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

	주택	에	대하여	겨	관
	할 지방자치단체:				
	로 부과·징수한				
2.					
_,					
	6억원을 초				
	<u> </u>				
			즈태어	1	۲IJ
	하여 관할 지방지	가치	단체?	기	장
	이 실제로 부과	징스	<u> </u>		
<u> </u>	삭 제>				